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농공단지 지원 법체계 일원화 등〉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1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4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10
2. 조문별 검토	14
가. 제명 및 총칙(안 제1조~제4조)	14
1) 제명,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 및 안 제4조)	14
2) 정의(안 제2조)	15
3)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17
나.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체계(안 제5조~제10조)	18
다.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및 특례(안 제11조~제14조)	31
라.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안 제15조~제20조 및 제 23조)	40

마.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안 제21조·제22조 및 제24조·제25조) … 48

※ 참고자료 5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1.
3. 회부연월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공단지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983년 도입된 이후 40여 년간 농어촌 경제의 중심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기반시설의 노후 및 부족, 지방소멸 위기 등에 직면하면서 농공단지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개입되어 업무별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관계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농공단지에 대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침체된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공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제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등의 이행점검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농공단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농공단지의 면적, 입주기업체의 자격, 농공단지의 고용 증대, 소득 증대, 인력수급, 인근 농공단지와의 협력 및 공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한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공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디지털화·친환경화·에너지이용 효율화, 폐수처리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바. 농공단지 지정면적의 특례,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농공단지 입주 유치 및 입주기업체에 관한 지원과 입주기업체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입주기업체의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농공단지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및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자. 한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 중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함.

[표 1]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정의

제2조(정의)

8. “산업단지”란 제7조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에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¹⁾에 따른 농어촌

- 1)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²⁾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³⁾에 따른 어촌
- 2)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3)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전 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산업입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기
본지침을 개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작
성·고시¹⁾하며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대도시시
장 제외, 이하 “시·군·구청장 등”)²⁾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

1) 「산업입지법」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행령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한다.

2) 「산업입지법」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6. 12. 20.>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지를 지정할 수 있음.

즉,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군·구청장 등의 지정을 받아 개발되고 이후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됨.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 산업집적 활성화, 산업단지 등에 대해 부령 및 고시·지침 등을 규정하고,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³⁾은 이에 따라 농공단지를 관리하며 관리업무를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그리고 농공단지는 두 법률 외에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법」,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고용정책기본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농공

있다.

3) 「산업집적법」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을 공동으로 수립·고시⁴⁾하고 있으며 통합지침에 따른 각 부처별 역할 및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 농공단지 관련 부처별 역할 및 주요 업무 내용

소관부처	역 할	주요 업무 내용
산업통상 자원부	농공단지 시책총괄,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체 관리	-관리기본계획, 분양, 입주선정 통보, 입주계약 및 해지, 농공단지협의회 등에 관한 지침 마련 -시·도 및 시·군·구 농공단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농공단지 관리교육 -농공단지 실태조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종합정보망 운영 등
국토교통부	농공단지 지정 및 조성	-시·군·구별/단지별 지정면적, 입지선정기준, 실시 계획 작성기준, 분양 및 분양가 등에 대한 지침 마련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농공단지 개발지원	-입지선정기준, 입지적정성·타당성조사 등,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단지조성비 지원 요령 및 운영기준 등 마련 -입주기업체,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환경부	농공단지 환경관리	-환경관리에 관하여 시·군·구청장 및 입주기업 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 마련 ·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환경성 검토,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증설 및 운영 등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지침에 따 라 시·군·구청장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중소벤처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성검토·종합심사, 자금·경영정상화자금 지

4) 참고로 「통합지침」의 소관 부처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5개이나,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침에 따른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침개정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 협의를 거치고 있음.

소관부처	역 할	주요 업무 내용
기업부		원, 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입주기업 지원, 인력확보 지원, 기반시설설치 지원,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설치 지침 마련 등
고용노동부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전업·농외취업희망 농어민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채용농어민에게 직업훈련 실시 -교육훈련 비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진흥 지원	-농공단지 문화적인 공간구성, 문화영향평가 실시 -농공단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

자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재정리

그러나 최근 농공단지는 점점 노후화되고 고용인원 등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개별법률에 분산된 지원사항을 일원화하여 농공단지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표 3] 최근 5년간 농공단지 운영 현황

연도	농공단지 수(개)		농공단지 면적(천m ²)		입주 기업체 (개사)	생산 (억원)	수출 (백만 달러)	고용 (명)
		노후		노후				
2021	475	296	77,312	46,704	7,892	615,568	11,975	154,450
2022	475	302	77,312	47,620	8,100	648,507	11,838	154,125
2023	480	312	77,853	49,345	8,286	650,348	11,975	152,012
2024	484	324	78,315	51,405	8,369	683,494	13,598	153,396
2025	484	335	78,315	53,565	-	-	-	-

주: 노후 농공단지는 지정된 지 20년 이상 경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현행 법체계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조정·분양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중 한 유형인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면, 일부 조문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법 적용 또는 법 개정과정에서 혼선 및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농공단지의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등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정면적, 재생사업지구 지정 등 각종 특례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기존 법률과의 중복가능성·정합성 및 타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으로 인해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동 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총 25개 조문과 부칙(시행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4조까지)은 동 제정안의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총칙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제2장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체계(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공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역할, 운영방식, 관계기관과의 협조 근거 등을 규정하며 위원회,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각각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이하 “시·도 활성화계획”) 및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체계적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함.

다음으로, 제3장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및 특례(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공단지 지정면적, 재생사업지구 우선 지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농공단지 지정 및 조성을 원활하게 하려

는 것임.

다음으로, 제4장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농공단지 입주 유치 및 입주기업체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해서 입주부터 판로확보 및 인력 확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그리고 입주기업체 취업을 위한 농어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운영비용,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 융자, 육아휴직시 생계비용·고용유지비용, 직장어린이집 및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등을 지원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음으로, 제5장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농공단지 지원업무 전담기구로서 한국농공단지연합회와 광역단위협의회·기초단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입주기업체 경영애로 해결 및 사고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시·군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제6장 보칙 및 제7장 벌칙(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는 특별회계·기금 활용근거를 규정하여 농공단지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한국농공단지연합회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군·구청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며,

한국농공단지연합회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표 4] 제정안 목차

장	조 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체계	제5조(농공단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제9조(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
	제10조(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11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제12조(농공단지 지정면적에 관한 특례)
	제13조(재생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제14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에	제15조(입주 유치 및 입주기업체 지원)
	제16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장	조 문
대한 지원	제17조(인력확보 지원)
	제18조(농어민직업훈련)
	제19조(근로자의 복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20조(문화생활 지원)
제5장 한국농공단지 연합회 등	제21조(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
	제22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제6장 보칙	제23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제24조(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제25조(과태료)
(시행일) 공포 후 1년 경과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총칙(안 제1조~제4조)

1) 제명,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 및 안 제4조)

제정안의 제명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고, 안 제1조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함.

[표 5]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명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입법목적과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임을 명시하고, 목적 조문은 농공단지 지원을 정책 수단으로 삼아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명시함.

그리고 제정안은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기존 산업단지 지정·개발, 활성화·관리 및 각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으로 하고

제정안에 따른 특례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안 제4조와 같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정의(안 제2조)

안 제2조는 농공단지, 농어촌, 입주기업체 및 공장 용어를 각각 기존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음.

[표 6]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입주기업체”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정안은 농공단지, 농어촌, 입주기업체 및 공장에 대해 각각 「산업입지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산업집적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다만,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 따라 이미 정의규정이 있는데, 제정안은 해당 정의규정을 인용하는 대신 입주계약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기존 정의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재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정의규정이 중복되어 향후 법 개정시 혼선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법안 심사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7] 기존 법률상 정의규정

용어	기존 정의규정
농공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입주기업체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공장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안 제3조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시행,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표 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공단지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공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공단지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도가 정합성 있게 정비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해소되며 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체계(안 제5조~제10조)

안 제5조는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공단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위원회가 정책수립, 국가정책 총괄·조정 및 각종 계획간 조정·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그 기능과 운용방식을 규율하며, 안 제7조는 위원회가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자료·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시·도지사협의체 등과 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함.

그리고 안 제8조는 위원회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9조는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시·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며, 안 제10조는 농공단지가 지정된 경우 시·군·구청장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표 9]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5조(농공단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의 협의체 및 전국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제21조에 따른 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농공단지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공단지 활성화 제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에 관한 국가정책의 총괄·조정 및 사후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법제처장
2. 조달처장
3.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제정안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와 제21조에 따른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① 위원회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공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 관련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제21조에 따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 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이하 “시·도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정안

② 시·도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도의 농공단지의 지정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종합계획에 따른 농공단지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및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해당 시·도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의 자격,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우선순위
3. 농공단지의 생산·수출 및 고용 증대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농공단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5. 입주기업체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기능인력 수급
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 공장과의 협력 강화
7.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 배치
8.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
9.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 지원

우선, 제정안은 농공단지 활성화 제도의 기본방향, 정책 총괄·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5조제

2항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간사로 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은 국무총리가 안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총 7명을 위촉(제1호 2명, 제2호 2명 및 제3호 3명)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6명(간사 2명 포함), 위촉직 위원 7명을 모두 포함해도 위원 정원은 14명에 불과함.

제정안은 앞서 위원 수 상한을 15명으로 규정했는데 해당 규정이 형식화되고, 통상 위원 수는 홀수로 구성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위원 수 및 구성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기존 법률 및 제도를 살펴보면 농공단지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어 서로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산업단지의 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농림축산식품부

5) 참고로 「법령입안심사기준(2022)」(법제처, 408쪽)은 위원회 구성시 위원 수를 가급적 홀수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중략)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한다.

소속 농업·농촌 및 식품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농공단지위원회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단지의 일종인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자문하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사항,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심의하는 산업단지기반시설 지원 등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사항,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중앙, 시도 및 시군구 각각 구성)가 심의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과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0] 기존 법률상 농공단지 관련 심의·자문위원회

법률	유사 심의·자문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u>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법률	유사 심의·자문위원회
산업입지법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u>산업입지정책심의회</u>(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u>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u>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⁶⁾는 유사·중복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위원회와 통합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제정안과 같이 농공단지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 위원회와의 유사·중복성 및 위원회 설치 최소화·효율화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위원회와의 유사·중복성 외에도 농공단지 지정 및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총괄 정책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도 유사한 견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⁷⁾이므로, 동 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 동 제정안의 ‘농공단지위원회’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보여짐 * 위원회는 통상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이 국무총리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일 것으로 판단 ○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에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하며, - 정부는 국정과제로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 현행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 산업단지 지정에 관해서는 국토부 소속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의 유사위원회를 활용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	○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의 한 유형으로 산업입지·산업집적 정책의 효율적인운동을 위해서는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와 연계한 종합적·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농공단지위원회 설치의 불필요

다음으로, 제정안은 위원회,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종합계획, 시·도활성화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 농공단지를 전략적·체계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함.

그런데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의 일종이므로 현행법령상 「산업입지법」상 산업입지수급계획, 「산업집적법」상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그 외에도 각 법률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표 11] 농공단지 관련 법정계획별 수립사항

계획명 (근거법률)	수립사항 또는 수립근거
산업입지 수급계획 (산업 입지법)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 (산업 집적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 진흥계획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

계획명 (근거법률)	수립사항 또는 수립근거
(산업 집적법)	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산업 집적법)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농어촌 정비법)	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 4. 제7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5.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8.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농촌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농촌융 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농촌융복합)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명 (근거법률)	수립사항 또는 수립근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의 나이를 따른다. 이하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같은 여러 법정계획과 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 시·도활성화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이 서로 수립주체·내용 등의 측면에서 유사·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제정안은 종합계획으로 위원회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산업입지수급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농공단지 정책 방향, 입지지정 및 관리, 지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서로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시·도 활성화 계획으로 해당 시·도의 농공단지 지정 및 관리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농어촌산업 육성기본계획 등과 각각 농공단지의 지정·관리 방향, 예산 확보, 지원방안 및 농어촌산업 발전·활성화 정책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은 시·군·구청장이 단지면적, 입주기업체 자격 등을 계획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산업집적법」에서도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에 단지면적, 입주대상업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계획과 수립사항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표 12] 제정안과 기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 비교

(제정안)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기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의 자격,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우선순위 (※ 제7호 중 일부와 우측 동일) 3. 농공단지의 생산·수출 및 고용 증대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농공단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5. 입주기업체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기능인력 수급 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 공장과의 협력 강화 7.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 배치 8.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 9.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 지원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 시행령제42조제1호 1.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행령제42조제2호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도 기존 계획과의 유사·중복가능성을 우려하여 해당 조문의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제정안 심사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8)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 별도의 농공단지 종합계획 불필요(제8조) ○ 「산업집적법」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5년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 불필요(제9조) ○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권자(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제10조)

다.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및 특례(안 제11조~제14조)

안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정보화기반시설 등을 각각 지원하도록 함.

그리고 안 제12조는 시·군·구청장이 농공단지 지정면적(「산업입지법」 제8조의2)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고, 안 제13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재생사업지구(「산업입지법」 제39조의2)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농공단지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장(부속시설 포함)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69조 및 제70조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표 13]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1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改替)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공단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기업체,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개별 기업의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환경보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농공단지 지정면적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의 면적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면적을 다르게 지정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재생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농공단지 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관할 지역 농공단지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요건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농공단지에 건축되는 공장(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본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개선 및 재생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수요에 맞춰 지정면적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농공단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건폐

율·용적률 등의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간적·기능적으로 효과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서는 재정여건 및 각종 특례 부여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기반시설 우선지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산업단지 중 농공 단지는 단지 수 기준으로 36.4%(484개), 지정면적 기준으로 5.3% (7,831m²)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규모 단지의 비중이 높는데, 정책적으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여부 및 기반시설 지원이 투입 대비 효율적일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4] 산업단지 총괄 통계현황

(단위: 개, m², %)

유형	단지 수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분양현황			
				분양공고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계	1,331	1,468,485,048	871,477,154	737,331,509	717,808,351	19,523,158	2.6
국가	53	794,569,516	395,163,511	342,454,676	336,207,167	6,247,509	1.8
일반	746	583,341,140	408,359,633	333,099,475	321,741,580	11,357,895	3.4
도시첨단	48	12,260,310	7,773,489	3,628,763	3,277,938	350,825	9.7
농공	484	78,314,082	60,180,521	58,148,595	56,581,666	1,566,929	2.7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2025. 2월말 기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공단지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면 타 산업단지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농공단지 지정면적 특례와 관련하여 현재 「산업입지법」 제8조의2는 무분별한 산업단지의 지정 및 확대를 방지하고자 미분양률 및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정면적을 제한하되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지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과 같이 시·군·구청장이 입주수요·미분양률을 고려하지 않고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허용하면, 시·군·구별로 농공단지 공급을 결정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조성된 농공단지의 내실있는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면적 제한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15] 「산업입지법」 상 지정면적 제한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시행령 제10조의2 4. 농공단지 : 시·군·구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 통합지침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 시·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농공단지 지정현황을 고려하면, 추가로 지정가능한 면적이 여유가 있는 편이므로, 시·군·구에 대해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⁹⁾.

다음으로, 재생사업지구 지정 특례와 관련하여,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동법 제39조의2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재생사업지구 지정시 단순 시설 개선 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를 포함하여 재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표 16] 「산업입지법」상 재생산업지구 지정

제2조(정의)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

9) 국토교통부 의견

- 현재 시·군·구의 평균 농공단지 지정면적은 63만㎡으로 100만㎡ 미만이며, 대다수 시·군·구(80%)가 100만㎡ 미만으로 지정 여유 면적(37만㎡) 존재
- 필요시 추가지정 요건(미분양율 등)을 충족하면 200만㎡까지 지정 가능

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호, 제6호의2,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 6의2.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7.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 등
8.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3. 재원 조달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능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재생사업 추진시 기반시설 정비 외에도 사업구조 전환 또는 첨단산업화 등을 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농공단지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이므로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 정비 역시 소규모 사업일 가능성이 크고, 기존 농어촌산업 및 입

지특성을 고려하면 업종전환이 제한적이고 첨단화 가능성 및 산업구조 전환 필요성 등이 낮은 편이라는 의견도 있음.

이를 고려하여 현행 「통합지침」에서도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규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사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에서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제도의 취지와 달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 및 투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법」 제69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법」 제70조는 해당 구역 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이 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받도록 함.

이 같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창의적인 설계 및 공공선도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2007년 도입되었으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심의회 지정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생활공간·사회적·문화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¹⁰⁾,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42조(건축선), 제55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56조(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 제58조(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60조(건축물의 대지면적 등), 제61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대지 규모 및 배치기준, 건축물 배치 및 동간거리 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주차장·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설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일부 건축기준, 소방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게 됨.

그런데 제정안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건축물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특례를 농공단지에 건축되는 공장(부속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기존 특별건축구역의 목적·요건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표 17] 「건축법」 상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

10)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운영원칙과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38호(2022. 3. 15.), 임유경 연구위원 등 3인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안 제15조~제20조 및 제23조)

안 제15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농공단지의 입주유치 및 입주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입주상담, 부실기업 대체입주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홍보·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는 공공기관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

그리고 안 제17조는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가 각각 취업지원, 병역지정업체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시 우대지원, 노령인구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과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농어업인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도록 함.

안 제1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업훈련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 설치·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고, 국가가 주거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융자, 육아휴

직시 생계비용·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공단지의 문화가치 제고 및 근로자 문화생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예술·관광사업 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 지원사업,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나 그 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도 수행할 수 있게 함.

[표 1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5조(입주 유치 및 입주기업체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농공단지 입주를 유치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 상담 및 입지 실사 2. 농공단지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의 사업성 검토 3. 부실기업의 대체 입주 4.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 제공 5. 입주기업체의 경영실태 및 동향 조사·분석 6. 입주기업체의 국내외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7. 입주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제정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입주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체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 등 기준이 입주기업체제품과 같은 경우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7조(인력확보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대상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령인구의 농공단지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농어업인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농어민직업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민직업훈련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가 농어민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근로자의 복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정안

입주기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입주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입주기업체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생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농공단지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농공단지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농공단지에서의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이나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제11조 및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제정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유치, 판로지원, 인력확보, 복지 및 문화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농공단지에 입주기업체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유치된 기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취지로 보임.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은 대부분 현행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보다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9] 제정안과 통합지침의 주요 지원 내용 비교

구 분	제정안	통합지침
입주기업체 자금지원 등	제15조(중기부, 경영안정 자금지원 등)	제23조(중기부, 자금지원), 제24조제1항(중진공*, 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제25조(중진공*, 입주기업 지원)
공공기관 우선계약	제16조(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구매촉진 의무 및 수의계약)	제24조제2항(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 수의계약 외 구매촉진 의무 미규정
인력확보 지원	제17조제1항(국가 및 지자체, 시책수립) 제2항(고용부, 취업지원) 제3항(중기부, 병역지정업체 및 외국인 연수생 추천시 우대) 제4항(보건복지부, 노령층 직업훈련 지원) 제5항(시·군·구청장, 협력 의무)	- 제28조(시·군·구청장 취업알선) 제29조의2(고용부, 교육훈련비용 지원) 제26조(중기부, 병역지정업체 및 외국인 연수생 추천시 우대) -
농어민 직업훈련	제18조제1항 및 제2항(고용부 및 지자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제3항(국가 및 지자체, 직업훈련 비용 지원)	제27조(고용부 및 지자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
근로자 복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19조(국가, 지자체, 복지시설·정착자금 융자 등 지원)	-
문화생활 지원	제20조(문체부, 시책마련, 국가와 지자체, 문화·관광·체육시설 재정적 지원 등)	제29조의3(문체부, 문화영향평가 실시 및 문화인프라 확충) ※ 문체부 외 국가·지자체의 문화시설 재정지원 미규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다만, 다른 법률 및 제도와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안 제16조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¹¹⁾과 같이 공공기관의 장이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79조¹²⁾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과 함께 수출·계열화 등 다양한 지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중복적으로 수의계약 규정을 포함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력확보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통합지침¹³⁾ 및 제정안은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전제로 하여 외국인연수생 추천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가 이미 폐지¹⁴⁾된 점을 고려·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12) 「농어촌정비법」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3) 「통합지침」

제26조(인력확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대상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4)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이후,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시행 중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부는 산업기능요원 평가기준 지표 중 “균형성장” 항목에 지방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가점사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¹⁵⁾,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우대지원하는 것은 가점 중복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안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력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은 특정 업종·기업이 아닌 고용전반의 고용안정, 인력 수급 균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본법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우대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정안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원시 입주기업체 및 구직자들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기본법 취지상 적합하지 않고 이러한 예외를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 따른 농어민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현재 통합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법률로 규정하는것에 대해서는 훈련대상, 훈련분야 다양성 등을 고려

15) 지방기업 가점기준(최대 6점)

- 수도권(1점), 광역시(2점), 시군소재(3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4점)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2점)

할 때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농어민직업훈련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국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3조는 농공단지 지원시 소요되는 비용을 기존에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농공단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그 외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도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안 제30조에 따라 농공단지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지원사업의 규모와 회계·기금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마.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안 제21조·제22조 및 제24조·제25조)

안 제21조는 시·도지사가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 시·군·구청장이 시·군·구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를 각각 구성·운영하고,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사단법인으로 한국농공단지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설립하도록 하며,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그리고 안 제22조는 시·군·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기업체 경영애로 해결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24조는 시·군·구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25조는 연합회와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표 20]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21조(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 ①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하는 전담기구로서 시·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단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단위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단위협의회 및 기초단위협의회의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농공단

제정안

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 및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농공단지 상호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 지원
3.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 및 관련 정책 건의
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협의회 및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협의회 및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해결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1조에 따른 한국농공단지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현행 「통합지침」에 따라 광역협의회, 기초협의회, 연합회 및 입주기업대책위원회가 이미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제정안과 같이 설립·설치근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 조직의 법적 안정성, 대표성, 위상 및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은 제정안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농공단지에 대한 폭넓은 관리·지원사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합회에 시·군·구 사무를 일부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연합회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시·군·구 사무를 위탁받은 연합회가 공신력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21] 「통합지침」상 협의회 등

제41조(농공단지협의회 등) ①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시·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 <u>광역단위협의회</u> ")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농공단지협의회(이하 " <u>기초단위협의회</u> ")라 한다)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학, 연구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가가 산·학·연 지역혁신 자문활동으로서 참여하고,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구성,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u>광역단위협의회 회장</u> 또는 지역혁신 거점별 <u>기초단위협의회 회장</u> 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합회는 농공단지활성화, 개선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입주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학·연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부시장 또는 부군수, 부구청장

나. 위원: 10인이내(시·군·구 관계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 지점, 관련금융기관 지점, 업계대표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사무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격: 심의·의결기관

나. 개최: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

3. 기능

가.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

나.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

다.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라.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

마.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

다만, 현행 통합지침에 따라 협의회와 연합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산·학·연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참고자료 참조) 제정안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공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사업¹⁶⁾ 등으로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법률로 협의회, 연합회 추진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농공단지에 대한 중복 지원이 우려된다는 입장이고,

「농어촌정비법」 제75조¹⁷⁾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역시 농어촌산업 육성지원 기구를 지정하고 이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부처간 예산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

1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4월 현재까지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2,180억원,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사업 12억원, 총 2,192억원을 농공단지에 지원함.

17)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3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

농공단지연합회(협의회) 지원현황

연도	집행액(만원)	지원건수
2010	29,821	농공단지 클러스터 글로벌 CEO 양성교육 등 9건
2011	15,686	제2회 농공단지 재도약의 날 등 5건
2012	9,680	제3회 농공단지 도약의 날 1건
2013	9,346	농공단지 도약의 날 등 3건
2014	3,925	전북농공단지 경쟁력강화 워크숍 등 4건
2015	11,167	농공단지 협력의 날 등 6건
2016	6,955	농공단지 몽골 경제협력 등 7건
2017	9,820	농공단지 도약의 날 등 7건
2018	10,164	농공단지 도약의 날 등 7건
2019	9,316	농공단지 도약의 날 등 9건
2020	1,856	농공단지 입주기업 통합 워크숍 등 6건
2021	5,242	농공단지 도약의 날 등 2건
2022	15,000	농공단지 도약의 날, 포럼, 간담회 등
2023	11,000	농공단지 도약의 날, 포럼, 간담회 등
2024	8,000	농공단지 도약의 날, 포럼, 간담회 등
합계	156,978	-